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나459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21631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4.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8. 7. 접수 제42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 1) D는 주식회사 E에 신용카드입회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이용대금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였다. 그 원리금채권은 2004. 5. 20. F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가 2011. 6. 15.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당시 D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 2)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9160호로 D를 상대로 위 원리금채권액인 '48,108,189원 및 그중 16,988,511원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2. 3. 28. 확정되었다.

나. D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과 D의 재산 상태

- 1) G은 2017. 4. 2.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외 2인이 있다(D의 상속분은 2/9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G의 소유였는데, 2017. 4. 2.자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8. 7. 접수 제422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2) D는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다른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이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남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남구 H

[도로명주소] 부산 남구 I

J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공동주택

1층 30평9작

2층 30평9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남구 H 대 18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K호

블록조 33.1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857분의 309. 끝.

